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09

발의연월일: 2024. 8. 16.

발 의 자:김도읍 • 권성동 • 박대출

구자근・조승환・곽규택

주진우 • 이성권 • 정희용

조지연 • 박형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 · 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 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법률 제 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제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피성년후견인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 제36조(결격사유)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 |
|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 | |
| 다. | |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 는 피한정후견인 |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1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의 | 제31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의 |
|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 결격사유) |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전 | |
| 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 |
| 없다. | |
| 1. 임원 및 전자문서보관등을 | 1 |
| 직접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대 | |
| 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하 | |
| "임원등"이라 한다) 중 다음 |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는 사람이 있는 자 | |
|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 | <u>가. 피성년후견인</u> |
| <u>정후견인</u> | |
| 나. ~ 바. (생 략) | 나. ~ 바. (현행과 같음)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